

# K쇼핑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

## 1. 목적

본 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,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와 관련하여, K쇼핑(이하 '회사'라 함)의 시청자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

가.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1)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2) 회사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3)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
나.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 3. 시청자위원회의 구성

가.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나.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,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다. 시청자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담당한다.

## 4.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

가. 회사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며, 시청자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함)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, 위원 적격여부 심사, 후보자 선정,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

따른다.

#### 1) 후보자 공모

-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,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.
-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(지원서 및/또는 이력서, 추천단체 추천서 등), 접수방법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# 2) 위원 적격여부 심사

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, 필요 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보안을 추천단체 또는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#### 3) 후보자 선정

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,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4) 위원 최종 선정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회사는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(이하 '선정위원회'라 함)를 구성하여야 하며,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.
-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커머스부문장으로 하며, 선정위원은 전사 경영기획 담당 임원 및 커머스부문 본부장 이상 직책자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### 5. 후보자 추천 및 위원 결격 사유

#### 가. 후보자 추천

- 1) 회사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.
- 2) 후보자 공모결과,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

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3) 추천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단체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.

#### 나. 위원 결격 사유

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i.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
ii.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
iii. 정당법에 의한 당원

iv. 기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### 6.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

가. 회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나.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, 회사는 선정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이때, 제6호는 당연해촉사유로 본다.

1)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2) 시청자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

3)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위원·임직원·이사·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

4)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5)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6) 5. 나. 위원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다. 회사는 후보자 위촉 전 해촉 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7. 시청자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

가.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연임 여부의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한다.

나. 시청자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,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.

다.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5. 나.에 규정된 위원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사임하며,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해촉사유로 본다.

## 8.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

가. 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시청자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나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9. 시청자위원회 운영

가.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.

나.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안건과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회의 소집 최소 3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 소집 당일 관련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.

다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10. 시청자위원회 관련 회사의 의무

- 가. 회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월간 위원회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.
- 나. 회사는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·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다. 회사는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## 11. 수당 등

회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 및 직무활동을 위한 실비 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12. 관련 법규

종류	법규명
법	방송법
시행령	방송법 시행령
규칙	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

## 13. 기록의 관리 및 보존

관리 및 보존해야 할 기록은 다음과 같다.

양식명	등록번호	관련표준	보존년한
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	0000000	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	영구

## 14. 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09월 29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일로 시행한다.